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가치지표(SVI)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7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적가치지표(SVI)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6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회적가치지표(SVI)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가치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사회적가치지표</u> ”란 <u>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를 말한다.</u> <u>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u> <u>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할 수 있다.</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u>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u>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 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 고,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그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다.</u> ③ <u>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 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둔다.</u> ④ <u>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 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u>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 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 회적가치 지표 개발, 측정· 평가에 관한 업무</u>
---	--

나. 검토의견

사회적기업은 영리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나, 그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책지원의 기준이 행정지침 또는 내부평가체계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인증제도 및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체계 자체를 법률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여 평가 기준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를 법률상 정의하고 평가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정책의 체계와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2017년 시범 적용 이후 현재 사회적기업 평가에 이미 활용 중인 지표임.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SVI는 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

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 ·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표] 사회적가치지표(SVI)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미션 (7)	사회적 미션	1. 사회적가치 추구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사업 활동 (35)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비계량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지표)	10
	조직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활동의 혁신성	14. 혁신노력도 (비계량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SVI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와 같은 평가 전문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지원 기준을 제도화

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를 마련한 점은 제도 설계상 의미가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SVI를 정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가·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SVI 개발·보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¹⁾.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 관리하고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자문위원회로 보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²⁾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

1) 개정안 제1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안 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개발 및 측정·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고용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1. 의의 및 경과

- (의의)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

* 사회적·경제적·혁신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14개지표로 구성

- (경과) '10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평가 도구 개발연구를 시작으로 시범측정 및 추가 연구를 통해 '16년 SVI를 개발하여, 대외 공표 후 사회적 가치측정에 활용('17.7월~)

< 개발 경과 >

- ('10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평가도구(SROI) 개발·평가 연구용역('10.12월, 고용부)
- ('1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3~'17년)에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포함
- ('13~'16년) SVI 시범도입, 연구용역 진행 및 전문가 TFT('16년)를 거쳐 초기 모델 개발
- ('17.7월~) SVI 대외공표, 매년 (예비)사회적기업 측정 중
- '17~'25년간 **총 4,252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대상으로 **전(全) 지표(14개)** 측정

- (지표개선) 사회적가치인증센터에 전문가·피평가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측정방식, 지표 등 지속 보완·개선 중

* 지표개발 이후 측정결과 및 전문가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 중(연 1~2회)

2. 지표구성

- 3개의 평가 관점에 따라 5개 범주, 총 14개 지표로 구성

- (관점별) ①사회적 성과(60%), ②경제적 성과(30%), ③혁신 성과(10%)

①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기제를 설정·실행하지는 여부 측정

②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물적 자원을 투입해 나타난 사업활동의 경제적 결과 측정

③ 기업 활동에서 제품·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는지 여부 측정

- (범주별) ①조직미션(7%), ②사업 활동(35%), ③조직운영(18%), ④재정성과(30%), ⑤기업혁신(10%)의 5개 범주로 운영

- (지표별)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등 총 14개 지표로 운영